

#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 발행인 (박춘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 Tel. 031-267-9399 | www.ggwf.or.kr | 2015.10.07.

##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 1.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을 완화(5%→4%)

##### 01 주요내용

- 10월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종전 연5%에서 4%로 하향 조정
  - 현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 선정기준액은 재산을 포함해 월 소득이 단독가구 9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 이하임
- 기초연금은 전국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10만 명,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약 1천5백명이 추가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전 신청탈락자도 재신청 가능
  - 경기도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말 기준, 전체 노인 124만9천915명 중 73만2천147명이 수급하여 수급률은 58.5%이며,
  - 장애인 연금의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수급권자 10만1천482명 중 5만7천923명이 수급하여 수급률은 57.08%로 전국 평균(66.6%)보다 낮음
- 대상자 확대에 따라 광역시·도 및 시·군의 재정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초연금은 국가가 40%~9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도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국비 70%, 도비 6%, 시군 24%임
  - 장애인연금 예산 매칭 비율은 국비 70%, 도비 4.5%, 시군 25.5%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15.10.1.)

##### 02 경기도 대응방안

- 소득환산을 완화에 따라 경기도 기초연금 대상자는 25천명, 예산은 시군비 포함 약 179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

기초연금	사업비(천원)				(명)
	계	국비(70%)	도비(6%)	시군비(24%)	
기존 예산	1,715,460,127	1,194,531,314	104,185,762	416,743,051	720,170
추가 예산	59,550,527	41,685,369	3,573,031	14,292,127	25,000

- 장애인연금의 경우 299명이 추가되며, 시군비 포함 약 1억6천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

장애인연금	추가 사업비(천원)				(명)
	계	국비(70%)	도비(4.5%)	시군비(25.5%)	
기존 예산	95,838,000	67,086,600	4,312,710	24,438,690	53,802
추가 예산	532,611	372,828	23,967	135,816	299

-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 추진 및 변경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조항을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개정 요구

## 2. 지역사회보호를 위해 노인주거정책의 전환 시급

### 01 주요 내용

- 2015년 현재 전국 노인인구비율은 12%로 2020년에는 15.7%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고령 사회에 대응한 제반 정책 중 가장 시급한 분야가 노인주거 분야임
  - 고령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주택 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며, 따라서 주택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심공간이 되고,
  - 경제적인 자립도가 높지 못한 고령기에는 신체적인 조건의 변화 및 경제적인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가 많아 안전한 주거의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됨
  - ※ 이상적인 주거복지란 고령자가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원한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주택에서 자신의 생활패턴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노인주거형태의 구성은 노인이 신체-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기능의 쇠퇴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신이 생활해 온 익숙하고 친숙한 지역 내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하며 생활하고 보호받도록 진행되어야 함
- 일부 케어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 기존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요양과 주거를 결합한(service-enriched housing) 노인주거시설을 공급하고,
  - 특히 노인의 요양욕구나 건강 수준에 따라 연속적인 보호(continuum of care)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인주거시설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

신체능력 경제력	건강한 노인	일부 케어가 필요한 노인	병약하여 케어가 필요한 노인 (장기요양보험등급내자)
높음	일반 주택	일반 주택	요양원, 호스피스 시설(민간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일반 주택	일반 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낮음	임대주택 노인주거복지시설	일반 주택(재가서비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급여)

- 미국의 경우 신체상황과 필요한 서비스에 맞춰 노인 주거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생활 지원시설 중 양로호텔은 비용이 고가이지만, 케어홈의 경우는 메디케이드와 장기간호보험으로 비용 충당이 가능함
  - 성인기정위탁은 우리나라의 공동생활가정과 유사하고 전문요양시설과 병원은 비용과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제공기관이 다양함

신체능력	건강한 노인	일부 케어가 필요한 노인	병약하여 케어가 필요한 노인	
유형	단독거주	생활지원시설 (양로호텔, 케어홈, 성인기정위탁)	전문요양시설 (사회모델)	병원 (의료모델)
서비스제공 정도	민간(유료) 가사도우미	식사, 목욕, 등 공적사회서비스 제공	공적 사회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제공	재활프로그램, 의료서비스 제공

\* 메디케이드 : 소득과 관련해 저소득층을 위해 주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 자료: 박화옥 (강남대학교수) 조추용(2005)의 자료를 수정·보완함.

###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일부 케어가 필요한 노인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다양화하고 환경개선 등의 정책 필요
  - 일부 케어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를 위해 노인복지법 제32조 개정
  -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 소규모 노인주택단지 마련
  - 가사와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을 차상위계층 이상으로 확대

# 02

##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 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제도 현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공론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으나, 실질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

- 현재 전국 광역지역자치단체 17개 및 기초지역자치단체 104개(약 45%)가 조례를 마련했으나 대부분이 재원 관련 규정을 권고 또는 노력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후속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임
-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제도가 일부 지자체에서 표면화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보수수준 인상방안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오고 있음
  - 경기도는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이원화된 경기도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올해 사실상 폐지하고, 내년부터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비를 신규 지원 예정
  - 수원시의 경우 보조금 지급방식을 포괄에서 분할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내년부터 중앙부처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전면 적용
- 복리후생 분야의 경우 '연봉 외 급여'로서 보수수준 인상만큼 종사자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처우개선 체감도 증진을 위해서는 복리후생제도 활성화 필요

\*본지 5호 참조

\*경기도 인건비 지급기준은 복지부기준 90%수준

#### <지자체 지원 복리후생제도 현황>

- 고양시 : 근속수당 지급 및 건강검진비·보수교육비 지원, 종사자워크숍 지원
- 부천시 : 자녀학비수당 지급, 종사자워크숍 지원
- 성남시 : 보수교육비·상해보험비 지원
- 수원시 : 건강검진비·보수교육비·상해보험비 지원 및 종사자워크숍·국외 벤치마킹 지원

\*현재 시행 중이거나 내년 시행 예정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복리후생제도 도입 현황(2014년 기준)

	복리후생 제도	도입 현황		복리후생 제도	도입 현황
1	산전후 휴가	43.5%	8	안식휴가제	9.8%
2	교육훈련비	37.6%	9	건강검진비 지원	9.3%
3	육아휴직	37.4%	10	보건휴가	6.1%
4	해외연수 지원	23.8%	11	자녀 학자금 지원	2.6%
5	경조사비 지원	19.7%	12	휴양시설 제공	1.5%
6	동호회 지원	12.6%	13	체력단련비 지원	0.8%
7	직원휴게시설	10.3%	14	근로자 대출	0.3%

\*자료 : 경기복지재단

-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로, 향후 인권관점에서의 전면적 접근이 요구됨
  - 복지현장은 업무과다, 고용 불안정, 안전성 취약 등 스트레스 요인이 혼재하고 있어, 저임금 문제 외에도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면적 처우개선 제도 마련이 필요

### 2. 재단 주요 행사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2015 기업사회공헌 컨퍼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10. 21.(수) 14:00~16:20</li> <li>• 장 소 : 경기도문화의전당 꿈꾸는컨벤션센터</li> <li>• 주 최 : 경기복지재단·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li> <li>• 대 상 : 기업사회공헌담당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li> <li>※ 문 의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031-220-7954)</li> </ul>

# 03 FACT CHECK

## 치매특별등급, 치매완화에 효과 있나?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 보호를 위해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5만 명 정도의 경증치매환자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 해당자가 치매특별 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인정

**<제공 서비스>**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이나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 8시간씩 최대 22일, 방문서비스는 1일 2시간 씩 최대 26일까지 받을 수 있음  
이용액은 월 766,600원 한도로 본인은 15% 수준인 115,000원을 부담

-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치매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존재
  - 치매특별등급 인정자는 9,849명('14.11월 말)으로 예상보다 적는데, 이는 가사지원 없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 제공하기 때문으로,
  - 등급외 판정을 받고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 가사지원을 받던 경증치매노인들은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 수급자로 남아있으려는 경향이 있음
  -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력 교육으로 1차년도(2014년)에는 요양보호사 9,552명과 시설장 4,480명만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커리큘럼도 이론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치매 완화를 위한 교육의 효과성이 낮다는 지적
- 가사지원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치매 환자서비스 구성을 새롭게 하는 한편, 인지활동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를 지도해줄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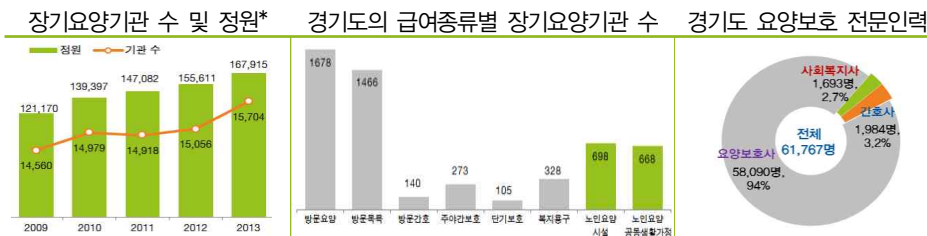
\*'14.7.1.시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회상 훈련, 기억력향상 활동, 전화, 장보기 등의 일상생활 함께 하기 등이 내용

\*노인돌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등급의 A,B 판정자 중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가 대상

# 04 통계로 보는 복지

## 장기요양기관 수 및 전문인력 현황



자료: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13

- 2008년 7월 장기요양이 도입된 이래 장기요양기관과 정원은 꾸준히 늘어, 2013년 기관 수는 15,704개, 정원은 167,915명임
- 장기요양기관은 70.4%의 재가와 29.6%의 시설로 구성되며, 경기도(3,611개)에 가장 많은 기관이 위치해 있고 서울(2,434개), 경북(1,070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요양서비스의 질관리를 위해 시설 인증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 요양보호 전문인력은 요양보호사(58,090명)가 대부분이며, 간호조무사(1,984명), 사회복지사(1,698)순임

\*단위: 명, 개

\*재가의 소개는 급여종류별 중복을 제외한 것임